

임원인사규정

제정	2007.12.24
개정	2008.01.30
개정	2008.10.27
개정	2010.05.13
개정	2011.08.16
개정	2013.08.13
개정	2014.01.21
개정	2014.12.30
개정	2015.05.13
개정	2017.04.11
개정	2018.03.01
개정	2019.06.25
개정	2020.03.18
개정	2020.08.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4.12.30.>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재단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7.4.11.>

제 2 장 임 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관련분야 인사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5.13.>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4.11., 2020.3.18.>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08.10.27., 2011.8.16.>

1. 삭제 <2014.12.30.>
2. 삭제 <2014.12.30.>
3. 시 청소년업무관련국장
4. 성남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관련국장

⑤ 감사 2인은 선임직 감사 1인과 당연직 감사 1인으로 구분하되, 선임직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며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 청렴성,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과 해당분야의 이해도를 가진 자이어야 하고, 당연직 감사는 시 청소년업무관련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3., 2018.3.1., 2019.6.25.〉

⑥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신설 2008.1.30.〉

제4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재단은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세부기준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9.01.01., 2019.06.25., 2020.8.25.〉
[본조신설 2018.12.14.]

[본조번호 개정 2020.8.25.]

제5조(임기 및 직무) ① 대표이사를 포함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1.〉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이사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하며, 임기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대표이사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8.13., 2017.4.11.〉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임직 이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 만료일은 기 위촉한 선임직 이사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7.4.11.〉

⑥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대표로서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4.11.〉

⑦ 대표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이 사고(선거 출마, 수감 등으로 시장의 업무를 권한 대행자가 수행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장 권한 대행자가 이사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7.4.11., 2018.12.14.〉

⑧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 3 장 복 무

제6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재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재단의 업무 감독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친절,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만료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25.>

제11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제한)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8.3.1.>

② 임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으며, 타 재단과의 대외협력을 위한 재단협의회에 관련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03.01., 2020.8.25.>

[제목개정 2020.8.25.]

제14조(근무시간 등) 임원은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재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재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4 장 상 별

제17조(포상) ① 이사장은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재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재단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임원이 재단에 재산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온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개정 2010.5.13>

1. 법령과 정관 또는 재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제19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직위해제,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20조(문책의 효력) ①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재위촉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해임할 수 있으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해임할 수 있다.

②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③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하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장에 대한 문책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때에는 대상 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임원의 심의 및 표결권은 없다. <개정 2010.5.13>

제22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5 장 보 쳐

제23조(인사관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2007.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8. 1.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5.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4.1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3.1.)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3.18.)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5.)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임원문책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 임	해임 - 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겹직 금지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